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20. 5. 20.(수) 15:30~17:3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윤세영홀
참석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김민서(사범대학 공동대표), 김영석(관리처장), 김우정(대학원 학생회장), 김효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옥경(학생처장), 오희아(학부 총학생회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임지혜(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최수인(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최혜련(예산팀장),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논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교무처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이 요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가 주요 안건으로 되어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한다. 요구안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지 질의하다. 코로나19로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으니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p> <p>- 기획처장이 요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했고 지난 회의록을 보면 계속되었던 내용이라고 말한다. 2번과 3번 요구안의 경우 2/3 이상 참석 시 개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1/4 위원이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다.</p> <p>-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얘기를 진행할지 먼저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에게 어떻게 논의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질의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측에서 내부 논의 결과를 질의하다.</p> <p>- 위원장이 검토한 안을 듣고 협의를 하자라는 말인지 질의하다.</p>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고 싶어서 요청한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과거 회의록들에 많은 부분들이 답변 되었고 2, 3번 요구안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모든 학교에서 과반수 체제로 진행하고 있고 2, 3번 요구안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개정안이라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말한다. 4번 요구안인 참관 허용은 등심위는 비공개 사항이 많은데 비밀보장 서약을 받는 것이 어렵고 회의록을 녹취록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기 때문에 참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속기록으로 알리는 차원이 중요하고 참관인 허용하면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발언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 하고 전달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참관 허용의 가장 큰 이유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전달, 알 권리 보장인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잘 쓰는 게 좋을까 논의하자고 말한다. 요구안 3, 5는 비슷한데 학생들이 가져오는 안건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자료 열람의 경우 실무 차원에서 1주일 전 열람은 어렵기 때문에 3일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주일과 3일이 열람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속기사 고용, 녹음 허용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녹음의 다른 용도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론내리고 싶다고 의사를 표하다. 등심위 외부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은 신임 외부위원 최종 선정 전 사전 면담 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논의 진행하려면 집중해서 결론을 내자고 의사를 표하다.

- 위원장이 학교에서 검토한 부분 말했는데 학생위원장 생각은 어떤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참관 허용에 대해서 참관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비공개 사항이 많은 것과 위원들 말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이유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맞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비공개 사항이 유출되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비공개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참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괴리감이 든다고 지적하다. 또한 속기록에 그대로 적히기 때문에 위원들의 말이 왜곡될 수 있다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참관 범위를 논의 하는 게 발전적이라고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참관인을 통해 회의 내용의 부분적 유출 혹은 공유되는 경우 전체적인 맥락과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예측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도 회의록, 속기록 다 올라가며 민감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발언 삭제를 요청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화인분들의 참관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전에 속기록에서 빼달라는 부분은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참관인 분들께 요청드리면 될 부분이라고 말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제정과 학생들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는데 참관을 보장하는 것이 우려사항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며 참관 허용을 재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중요한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녹취록 수준으로 공개하고 예산, 회계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꼭 참관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참관이 허용된다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고등교육법 제11조 6항에 따르면 회의록 게시 하는 것이 법령으로 규정되어있다고 말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그 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관 시 예상치 못한 부분 때문에 참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를 마련하여 비밀유지를 하도록 회의록 날인처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중앙운영위원회도 참관을 보장하고 있지만 무단으로 내용이 유출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병원도 발제하러 참관 오시듯이 등록금 관련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참관과 발언권 보장이 필요하며 명확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참관인 발언까지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발언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참관을 요구 이유가 알 권리 차원의 공개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 공개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이 참관과 발언까지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구성원들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의결기구인데 참관과 발언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록이 자세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참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문서를 보는 것과 참관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차이라고 답하다. 회의 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서 상황을 오류나 왜곡 없이 기록하는 것임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참관인이 왜곡되어서 기억해도 회의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해 달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분위기는 참관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다. 회의록 작성하고 있고 왜곡될 내용 같은 경우는 절차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말하고 구성원들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참관 관련 부담은 모든 위원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하다. 참관 이유와 목적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과정과 결론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가 참관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다른 위원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참관인들에게 공지하고 서명까지 함으로써 발언 왜곡 전달되지 않도록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참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모든 구성원 참관할 경우, 어떤 절차적 보완 장치를 함에도 왜곡이 떠도는 것은 부담은 학생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위원회는 그런 부담이 무서운 것인지 궁금하며 다른 학교 위원들의 의견도 궁금하다고 말하다.

- 총무처장이 참관이 허용되면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다. 발언은 없고 참관만 하면 그 목적이 회의의 공개와 공유일 텐데 지금의 회의록을 통해 상당히 정확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녹취, 속기와 연결되어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연결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지금보다 녹취 수준으로 더 정확하게 한다면 굳이 참관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것 또한 참관과 녹취, 속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참관이 제한된 숫자로 진행될 텐데 그것이 학생위원들이 들어오는 것과 몇 사람이 더 들어와서 참관하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질의하다. 참관인들이 하는 역할을 학생위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외의 참관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교 재정의 50% 이상이 학생들의 돈으로 사용이 되는데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위원의 수가 6명으로 다른 학교보다 많은데 참관인을 몇 명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의하다. 내용은 속기록으로 전달되고 있고 분위기 전달은 학생위원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곳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외의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교위원들은 학생위원들이 학생들에게 장내 분위기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참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질의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참관을 오는 것 자체로 장내 분위기를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참관할 시 학교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위원들도 발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신의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고 희망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하며 참관 인원 범위, 자격, 전자기기 사용 제한 혹은 비밀 보장 서약 작성 등의 체계를 통해 학교위원들의 우려 지점을 보완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다.

- 관리처장이 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학생위원들은 속기와 녹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녹음 허용은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다.

- 관리처장이 녹음은 현재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참관인이 허용될 시 녹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질의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녹음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할 시 누락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며, 참관인 허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하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분에 한해서 녹취 후 회의록 날인 시 삭제하는 걸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면 될 일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들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는 학생처장의 발언에 의문을 표하다. 구성원들이 직접 참관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학생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별개임을 지적하다.

- 학생처장이 본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기구이며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라고 말하다. 회의록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꼭 참관을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 의사를 표명해 주시는 분들에게 회의록을 열람하라고 안내해 드리는 게 충분하다고 발언한 것인지 질의하다. 덧붙여 참관인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심의 및 의결 기구임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이 참관 허용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것과 장내의 논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냐고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자신의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회의록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아닌, 회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사용 내역의 경우 예산과 결산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건 전달받는 것임을 지적하다.

- 위원장이 학교위원과 학생위원들의 대립 구도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다. 학생위원들이 주장하는 근거 외에 다른 근거는 없는지 질의하며, 국회 외의 학내 위원회에서는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근거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 회의에 단과대학 공동대표들이 참관 피켓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에 장내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하였음을 전하다.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2018년 12월 진행된 회의에서 의장이 승인할 경우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을 말하다. 학교위원들이 우려하는 무분별한 유출, 참관인의 모호한 역할 등의 부분은 참관 요청이 있을 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참관 요청이 있을 시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당시 논의는 단과대학 공동대표들의 퇴장 이후 진행하였음을 지적하며 논의에 참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당시 단과대학 공동대표들이 30분 정도 착석한 이후 퇴장하였음을 전하며, 당일에도 참관인 허용에 대하여 학교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였음을 전하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장내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었음을 말하며 학생위원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을 전하다. 이러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에 한해 참관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 대해 참관 허용을 요구하는 것임을 지적하다.

- 학생처장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에게 왜 국회에서 참관을 허용하며 방송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학부 부총학생회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시정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다. 대표를 선출하였다고 해서 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논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또한 더욱 민주적인 회의체가 되기 위하여 참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각 위원들이 심의 및 의결기구에 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것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관을 요청하는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국회도 참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말한다.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으며, 이에 2020년에도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관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이 각 항목마다 합의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오늘 논의를 끝마치지 못할 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처장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우선 5시 30분까지 합의할 사항은 합의를 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먼저 합의할 사항은 합의하되 논의를 마치지 못한 사안은 추후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말씀한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그것 또한 방법이라고 답하다. 내규를 검토하여 보니 등록금 책정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전하며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였으며 요구안 2번과 3번의 경우 서로 상충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들이 안건을 전달하면 총장에게 보고 하겠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오늘 논의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내규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규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다. - 위원장이 현재 규정에 대해 설명한 것임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

- 위원장이 내규를 개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합의할 부분은 합의를 하되 나머지는 다음을 기약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총장이 불허할 경우 오늘 논의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을 지적하며 학교위원 측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함을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러한 현황 때문에 ¼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안건 상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총장이 승인을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위원들이 지금까지 본회가 심의 및 의결 기구이며 각 위원들이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하였음을 말하며, 기타 안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위원장이 총장이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에 관한 사안은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오늘 대략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참관 허용여부에 대한 문제는 기능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의 주장에는 정서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아니라고 느껴지며 보편적이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학교도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18년 12월 대학평의원회에서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그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닌 대학평의원회의 일이라고 지적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다른 위원회의 현황을 질의하길래 답한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2019년에는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당시 의장이 적당한 근거 없이 지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본인이 타 학교 사례 중 참관을 허용한 사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며 타 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타 학교의 사례가 없다고 하여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가 먼저 민주적이며 선진적인 예시로 남을 수 있으며, 2018년도의 대학평의회 논의 역시 이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논의가 평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은 본교가 먼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학교위원들은 여러 가지 근거와 상황과 타 학교의 사례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말한다. 이 문제는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것 같으며 속기사 고용에 대한 안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합의점을 제시하는 것인데 학교위원들은 이것도 반대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반대 의견을 표하다. 현재 한 시간 넘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나 좁혀지기 힘들음을 전하며 타 학교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으나 그런 사례가 없음을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범위를 제한하고 절차를 거쳐도 어렵다는 학교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며, 타 학교 사례나 근거를 찾아 본 이후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인 건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의 말이 맞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 허용의 합의안으로 학생위원 수를 늘린 타 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본교의 논의 방향에 참고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고등교육법상 어느 한 구성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제한돼 있으며, 학생위원을 늘릴 시 학교위원을 늘려야 함을 말한다. 많

은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 장소를 구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타 학교의 경우 제한된 범위이지만 배석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직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려 7명이 참관하였음을 말한다. 본교 역시 이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위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모든 구성원에 한해 참관이 불가능하다면 인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 이도 불가능하다면 의장의 승인 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구하다.

- 위원장이 1) 모든 구성원에 대한 참관 허용 2) 수 제한을 통한 배석 제도 도입 3) 의장의 승인 하에 일정의 참관 허용으로 총 세 가지 안을 정리하다. 위 세 가지 안을 검토한 이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추후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구체적인 인원을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함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세 가지 안에 대해 검토하여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참관에 대한 건은 이와 같이 마무리함을 전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가장 빨리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녹음 허용 및 속기사 고용에 대한 건임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녹음보다 속기사 고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전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속기사의 회의 내 고용의 경우 최소 22만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전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녹음을 허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제안하다. 비밀 유지의 측면에서 회의록 날인 시 녹음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다.

	<p>- 기획처장이 속기사를 고용할 경우 녹음할 필요는 없으며, 속기사 고용의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임을 말한다. 녹음의 경우 타 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이 많았음을 말한다. 이 안건은 검토하여 추후 논의에서 전달하도록 할 것임을 전한다.</p> <p>-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이 생각하는 녹음의 방식에 대해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녹음 허용에 대한 건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은 허용되지 않음을 말한다.</p> <p>- 학생처장이 비용의 문제가 해결될 시 속기사 고용에 대해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p> <p>- 기획처장이 속기사 고용에 대한비용이 학교가 지불할 것이며 학교는 속기사 고용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덧붙여 속기사를 고용할 시 녹음 허용에 대한 주장은 철회되는 것인지 질의하다.</p> <p>- 관리처장이 속기사 고용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녹음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획해 보는 안을 제안하다. 또한 학생위원들은 녹취 허용과 속기사 고용 중 어느 것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녹취 요구는 회의록을 잘 작성하기 위함이므로 속기사 고용을 통해 회의록이 잘 작성된다면 상관 없을 것 같다고 답하다.</p> <p>- 관리처장이 속기사 고용에 이견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교 측은 녹음을 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인지 질의하다.</p> <p>- 학교위원들이 그렇다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측의 속기사를 고용하는 것인지 질의하다.</p> <p>- 학생처장이 속기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텐데 그 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이 속기사를 총 두 명 고용하자고 요청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측에서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들이 돈을 지불할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돈을 학교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측에서 속기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학생 측이 추천한 속기사와 학교 측에서 추천한 속기사 중 비용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속기사 고용이 결정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속기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되 속기록만 작성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말하다. - 위원장이 다음 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위원 측이 2번 요구안과 3번 요구안이 상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3번 요구안의 경우 ¼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 소집 공고를 해 달라는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⅔ 이상 참석 가능한 날로 조율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¼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여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⅔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개최될 수 없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규정은 반민주적이라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국회의 경우 특별정족수로 ⅔ 이상 참석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다.
--	---------------------------------------------------------------------------------------------------------------------------------------------------------------------------------------------------------------------------------------------------------------------------------------------------------------------------------------------------------------------------------------------------------------------------------------------------------------------------------------------------------------------------------------------------------------------------------------------------------------------------------------------------------------------------------------------------------------------------------------------------------------------------------------------------------------------------------------------------------------------------------------------------------------------------------------------------------------------------------------------------------------------------------------

- 기획처장이 국회를 예로 들지 말 것을 당부하며, ⅔ 이상 출석 시 개최 가능하다는 규정은 언제든지 개최 및 폐회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다. 국회와 달리 등심위의 경우 기능적이며 등록금 심의라는 명확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위 요구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3번 요구안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다고 답하며 등록금과 관련된 사안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학생들이 요청한 안전에 대하여 지금까지 필히 논의하였음을 강조하다.

- 위원장이 현재 내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⅓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시 일주일 이내에 개최를 진행해야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⅓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시 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정 절차를 일주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임을 말한다.

- 위원장이 결국 실질적으로 회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⅓ 이상의 위원이 참석할 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두 번째 요구안인데 일정이 조정되지 않아 ⅓ 이상의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2번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3번 요구안을 수용하는 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음을 말한다. 타 학교의 경우 학생위원이 위원의 1/3이며 ⅓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본교의 경우 등심위 내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음을 지적하며,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이 요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목적이 등록금 책정 외의 사안인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 외의 사안일 수도 있다고 답하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이 위원장에게만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것인지 반문할 만큼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가 위원장에게 권한이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의 목적이 뚜렷하며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렇다면 타 학교의 경우 그러한 규정을 왜 갖췄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 외의 사안일 수도 있다고 답하였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외의 사안을 논의하지는 것은 위원회 목적과 맞지 않음을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 외의 사안의 경우 구조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이라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그 부분은 합의하여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러한 합의의 과정까지 토론이 치열하다고 답하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학생위원들이 안건 상정 요청을 두 번이나 하였으나 두 번 다 거절되었음을 지적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시 등록금과 관련된 사안도 추가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 받았음을 강조하며, 학교 위원들이 타 학교 사례를 요구하여 타 학교 사례를 제시하였음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위원들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다.

- 위원장이 추가 개최를 하는 데는 안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금까지 학생위원들이 안건을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답하다. 준비한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면 개최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것을 규정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임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목적은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 심의임을 말한다.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세네시간 가량 진행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추가할 경우 악용될 수 있으며 위 규정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심도 있는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많아 회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며, 심의 결과에 대해 경영자는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전하다. 학생위원들의 경우 학교의 처장단과 만나는 자리가 많지 않기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현황에 공감하나,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함을 당부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들 역시 대립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합의를 원해 앞선 논의에서도 절충안을 제시하였음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위원들 역시 앞선 논의에서 타 학교 사례를 제시하였음을 말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들도 타 학교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사안은 검토하여 추후에 논의할 것을 전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다음 논의의 경우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아니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그렇다면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개최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목적이 분명하고, 위원들이 모이는 이유는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하다.

- 위원장이 오늘은 기존에 합의한 사안에 따라 위원들이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임을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구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도 기존에 총장님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여도 정기 회의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질의하다. 구조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정기 회의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다. 학교위원들의 발언은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위원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하였으나,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환원과 관련하여 논의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였음을 지적하다. 교육부에서도 등록금 환원에 대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목적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위원들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지난 회의에서 등록금 환원에 대하여서는 9월 초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면 자료를 보고 논의하자고 합의하였음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등록금 환원에 대한 건을 논의하지 않고 9월 초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다.

- 기획처장이 오후 5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함을 말하다. 덧붙여 등록금 환원과 관련된 논의를 지난 회의에서 한두 시간 가량 진행했으나 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 지출 내역을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당시 학교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했던 것이 아님을 말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규와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등록금심의위원회 장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을 전하다. 이전에 진행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구조 개선 논의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말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목적이 있으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임을 말하다. 이 자리는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고민하는 자리이며, 오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면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임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논의에 대하여 위원들과 정식적인 회의체 내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는 것임을 전하다. 현재 고등교육법도 개정이 되고 있는데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에도 발전이 있길 소망함을 전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를 언급한 것은 회의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참고한 것임을 전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위원장은 현재 구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내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려면 총장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는 것임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내규가 있음에도 구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더 나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최한 것임을 말한다. 작년 재작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최한 것이며 타학교와 같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제안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내규를 추가할 수 있음을 말한다.

- 위원장이 내규를 고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구조 관련 논의 규정 찾아 보니 총장께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고 내규가 이렇게 되어있으니 1/3 이상의 요청 시 안전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임을 밝히고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안된다라고 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이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총장님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구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 개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 위원장님이 추측이라고 하셨지만 추가 개최 된다면 그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다.

- 위원장이 총장님께 본 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 임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님께서 여태까지 구조 등심위 순탄하게 개최가 된 것처럼 축소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안전상정 요청서 드리면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자 미루어왔음을 말한다. 학생위원 입장에서는 개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임을 밝히다. 1/3 이상이 요청할 시 안전상정하고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등록금과 관련된 안전은 이미 정해진 안전이 있고 안전이 많아지면 제한된 시간에 집중도 있게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안전이 상정되는 경우도 있고 항상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고 말한다. 내

규화되면 모든 안전들이 상정되어야하고 그것은 사고의 낭비고 지금도 제한된 시간에 안전 처리하려했는데 ¼ 안전상정한다면 회의 진행이 예측불허하고 낭비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의사를 표하다. 등록금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이 안전 상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것은 구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다시 말씀 드렸음을 밝히다. 1/4의 위원이 요청했을 때 안전상정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항상 안전 상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것임을 말하다. 지난 회의에서도 안전 상정을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음을 말하다. 여기서 논의 사항이 아닌 안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학생들이 예상할 수 없는 안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 기구임에도 학생 위원 측에서 이 자리에 처장들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논지를 흐리는 안전을 논의 요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함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 자리에 처장이 참석한다고 하여 안전 외에 논의 요청을 드린 부분은 등록금 환원 외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관광객 쿠폰제, 수강신청 등 그 외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말하다. 그 외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5시 30분까지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위원 선정 시 학생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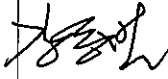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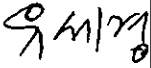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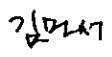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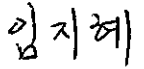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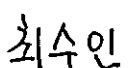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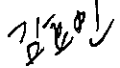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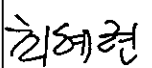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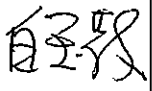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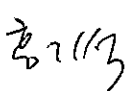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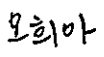
- 기획처장이 사전에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내정된 위원에 대한 면담인 것인지 후보를 면담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면 도움이 될 것임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4대 회계 법인 중 경력을 갖춘 임원 급의 동문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측과 사전 면담을 하도록 하고자 함을 말하다. 외부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전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이 송부한 자료에 의하면 타 학교의 경우 총장이 추천한 위원 중 학생 측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다. 학생위원들이 생각한 안에 대해 질의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이 학교 위원들은 2019년 회의에서 사전 인터뷰를 제안함을 전하다. 학생위원 측에서 위 안을 수렴할 것인지 별도의 안을 제시할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자격 조건을 생각하여 사전 면담을 제안한 것이며 혹시 덧붙일 제안이 있다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 측의 안에 대해 질의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 측의 후보 추천 과정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하며 기존 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외부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처를 통해 제공할 것을 약속하다. - 예산팀장이 신임 외부위원 선임은 기존 외부 위원이 사임을 표하는 경우 진행하고 있음을 말하다. - 위원장이 논의를 정리하며 추후 회의 일정을 조율하여 논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기약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다음 논의에서 학교위원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정리하여 가져올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5월 20일</p>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위 원	유세경	
	위 원	김민서		위 원	이상은	
	위 원	김영석		위 원	임지혜	
	위 원	김우정		위 원	최수인	
	위 원	김효민		위 원	최혜련	
	위 원	백옥경		위 원	홍기석	
	위 원	오희아				
작성 자	총학생회 장문아			장문아		